

의안번호	제 824 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자	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8월 25일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장선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24
----------	-----

발의연월일 : 2021년 8월 25일

발의자 : 장선배, 박형용, 이숙애
이상욱, 이의영, 허창원
이상정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체계적이고 원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해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도지사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규정함. (안 제4조)
- 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활동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마.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1-97호
- 다. 협의 :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 라.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인수를 통한 도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지사 당선인” (이하 “도지사 당선인” 이라 한다)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로 당선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도지사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을 말한다.
2. “충청북도지사직” (이하 “도지사직” 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 등 법률에 따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도지사 당선인은 도지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도지사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도지사 당선인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등) ① 도지사 당선인을 보좌하여 도지사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도지사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도지사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도지사 당선인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임기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 기한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도지사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제8조(사무직원 파견)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활동 및 예산 지원) 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제9조제4항의 자문위원 포함)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①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지사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모든 내역을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예산사용 명세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적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운영세칙)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 20명 이내
2. 시·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4조(임기개시) ①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일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②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하 이 項에서 “議員”이라 한다)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일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제30조(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시의 選舉 등)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선일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삭제

③ 제187조제4항 및 제18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원활한 직무 인수를 통한
도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 도모
-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9조(위원회 활동 및 예산지원)
 - 공공건물 사무실 제공, 사무실내 집기 및 물품 도 지원
 -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 별도예산 계상 필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지원대상 : 위원회위원 20명, 자문위원 30명
 - * 충청북도 의회 의원 및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제외
- 2) 지원내용 : 출석수당, 여비
- 3) 산정기준 :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

나. 추계 결과 : 선거가 있는 해(2022, 2026)에 74,000천원 소요

1) 출석수당

- (위원회위원) 100,000원 × 20명 × 20회 = 40,000,000
- (자문위원) 100,000원 × 30명 × 10회 = 30,000,000

2) 여비(위원회위원) : 20,000원 × 20명 × 10회 = 4,0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 입	74,000	-	-	-	74,000	148,000
도 비	74,000	-	-	-	74,000	148,000
세 출	74,000	-	-	-	74,000	148,000
인수위원회 수당	74,000	-	-	-	74,000	148,000